

신학과 학생회 회칙

제 4 장 학 생 회

(개정 전)

제1절 학생회 정, 부회장

제13조 (지위)

- 1) 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학생 총회, 집행위원회 의장이 된다.
- 2) 학생회장은 대외적으로 학생회를 대표하며 각계각층과 연대 활동을 관장한다.
- 3) 학생회장은 대학 자치 및 학생 자치활동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학교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 4) 학생회 부회장은 학생회를 보위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 5) 학생회의 정, 부회장은 학생 징계 및 회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학교당국에 제시 할 수 있다.

제14조 (임기) 학생회 정,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매년 2학기 정기 총회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단, 1달 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갖는다.)

제15조 (신분 보장) 학생회의 정, 부회장은 본인의 의사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당하게 그 지위에서 해임 되지 아니한다.

제16조 (선출) 학생회의 정, 부회장은 공동 입후보하여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17조 (업무 및 권한) 학생회의 정, 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학생회와 학생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심의, 조사할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2) 집행위원회의 각 임원을 임명한다.
- 3) 학생 총회,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업무를 주관한다.
- 4) 학생회의 전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학생 총회에 안건을 제출한다.
- 5) 학생회의 예산 집행을 결재한다.
- 6) 대내외 활동에 대한 대표권을 갖는다.
- 7) 기타 필요 부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2절 학생회 집행 위원회

제18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19조 (구성) 집행위원회는 학생회 정·부회장, 각 임원으로 구성한다.

(단, 집행 위원은 필요한 경우 학생회장의 동의를 얻어 그 산하의 특위를 둘 수 있다.)

제20조 (업무 및 권한)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학생회비의 심의 승인권을 가진다.
- 2) 학생 자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학교 행정에 관한 발의권을 가진다.
- 3) 회칙 개정에 대한 발의권을 가진다.
- 4) 학생회의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 5) 학생회의 일체의 사업 계획 예산안을 수립하여 감사 위원회에 제출한다.
- 6) 집행 위원의 제반 활동을 집행하기 위하여 총무, 부총무, 서기, 회계, 행사부, 홍보부를 두고 각 임원을 둘 수 있다. (단, 각 부서는 필요시 부원을 둘 수 있다.)
- 7) 각 부서의 업무 및 권한
 - 총 무 : 집행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총무 : 총무를 보위하고 총무 유고시 그 임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 서 기 : 제반 서류를 기록, 보관, 발송한다.
 - 회 계 : 본 회의 경리 및 회계 운영을 담당한다.
 - 행사부 : 본 회의 행사의 운영, 기획 및 조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홍보부 : 교내외의 모든 사업 활동의 홍보 및 본회의 중요한 여론조사를 담당한다.

(개정 후)

제1절 학생회 정, 부회장

제13조 (지위)

- 1) 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학생 총회, 집행위원회 의장이 된다.
 - 2) 학생회장은 대외적으로 학생회를 대표하며 각계각층과 연대 활동을 관장한다.
 - 3) 학생회장은 대학 자치 및 학생 자치활동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학교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 4) 학생회 부회장은 학생회를 보위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 5) 학생회의 정, 부회장은 학생 징계 및 회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학교당국에 제시 할 수 있다.
- 제14조 (임기) 학생회 정,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매년 2학기 정기 총회로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단, 1달 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갖는다.)
- 제15조 (신분 보장) 학생회의 정, 부회장은 본인의 의사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당하게 그 지위에서 해임 되지 아니한다.
- 제16조 (선출) 학생회의 정, 부회장은 공동 입후보하여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제17조 (업무 및 권한) 학생회의 정, 부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학생회와 학생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심의, 조사할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2) 집행위원회의 각 임원을 임명한다.
 - 3) 학생 총회, 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업무를 주관한다.
 - 4) 학생회의 전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학생 총회에 안건을 제출한다.
 - 5) 학생회의 예산 집행을 결재한다.
 - 6) 대내외 활동에 대한 대표권을 갖는다.
 - 7) 기타 필요 부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2절 학생회 집행 위원회

- 제18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 제19조 (구성) 집행위원회는 학생회 정·부회장, 각 임원으로 구성한다.
(단, 집행 위원은 필요한 경우 학생회장의 동의를 얻어 그 산하의 특위를 둘 수 있다.)
- 제20조 (업무 및 권한)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학생회비의 심의 승인권을 가진다.
 - 2) 학생 자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학교 행정에 관한 발의권을 가진다.
 - 3) 회칙 개정에 대한 발의권을 가진다.
 - 4) 학생회의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 5) 학생회의 일체의 사업 계획 예산안을 수립하여 감사 위원회에 제출한다.
 - 6) 집행 위원의 제반 활동을 집행하기 위하여 총무, 부총무, 서기, 회계, 행사부, 홍보부를 두고 각 임원을 둘 수 있다. (단, 각 부서는 필요시 부원을 둘 수 있다.)
 - 7) 각 부서의 업무 및 권한
 - 총 무 : 집행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 부총무 : 총무를 보위하고 총무 유고시 그 임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 서 기 : 제반 서류를 기록, 보관, 발송한다.
 - 회 계 : 본 회의 경리 및 회계 운영을 담당한다.
 - 행사부 : 본 회의 행사의 운영, 기획 및 조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홍보부 : 교내외의 모든 사업 활동의 홍보 및 본회의 중요한 여론조사를 담당한다.

제 3절 비상대책 위원회

제 21조 (지위) 비상대책 위원회는 본 회의 비상대책기관이다.
(재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정/부가 선출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신학과 학생회에서 비상대책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 22조 (임기) 비상대책 위원회의 임기는 2학기 종강예배로 한다.

제 23조 (구성) 신학과 4학년 대표, 신학과 3학년 대표, 신학과 2학년 대표, 신학과 1학년 대표로 구성한다.
(단,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통하여 신학과 학생회가 구성될 시, 모든 권한은 학생회로 위임한다.)

제 24조 (업무 및 권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1) 비상대책 위원장은 대외적으로 학생회를 대표하며 각계각층과 연대 활동을 관장한다.
- 2) 비상대책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학 자치 및 학생 자치활동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학교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비에 대한 권한은 없다.)
- 3) 비상대책 위원장은 학생 징계 및 회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학교당국에 제시 할 수 있다.
- 4) 학생 자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학교 행정에 관한 발의권을 가진다.

- 5) 학생회의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 6) 대내외 활동에 대한 대표권을 갖는다.
- 7) 비상대책 위원회 직책 업무 및 권한
 - 위원장 :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 및 계획한다. (신학과 4학년 대표)
 - 부위원장 : 부위원장을 보위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임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신학과 3학년 대표)
 - 총 무 : 집행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학과 3학년 대표)
 - 부총무 : 총무를 보위하고 총무 유고시 그 임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신학과 2학년 대표)
 - 회 계 : 본 회의 경리 및 회계 운영을 담당한다. (신학과 2학년 대표)
 - 서 기 : 제반 서류를 기록, 보관, 발송한다. (신학과 1학년 대표)

제 8 장 선 거

(개정 전)

제29조 (정·부회장)

- 1) (경선) 학생회장은 본 회원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공동 입후보하여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재적 과반수 투표에 최다 투표자로 한다. (단, 무효표가 후보자간의 표차를 상회할 때 재선거를 실시한다.)
- 2) (단독) 학생회장은 본 회원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공동 입후보하여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재적 과반수 투표에 $\frac{1}{2}$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30조 (선거 방법) 본 회의 선거는 보통, 비밀, 직접, 평등선거로 한다.

제31조 (선거시기)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11월에 실시한다.

제32조 (선거관리위원회)

- 1) 본 회의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거 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 2) (구성) 학생회장, 부회장, 총무, 각 학년 대표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 3)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20일 전에 작성 비치해야 한다.
- 4)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자동 해체된다.

제33조 (보궐선거) 학생회 정·부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탄핵을 받을 경우 궐위된 일시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

제34조 (선거 시행 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선거 시행 세칙에 따른다.

(개정 후)

제29조 (정·부회장)

- 1) (경선) 학생회장은 본 회원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공동 입후보하여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재적 과반수 투표에 최다 투표자로 한다. (단, 무효표가 후보자간의 표차를 상회할 때 재선거를 실시한다.)
- 2) (단독) 학생회장은 본 회원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공동 입후보하여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재적 과반수 투표에 $\frac{1}{2}$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30조 (선거 방법) 본 회의 선거는 보통, 비밀, 직접, 평등선거로 한다.

제31조 (선거시기)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11월에 실시한다.

제32조 (선거관리위원회)

- 1) 본 회의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거 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 2) (구성) 학생회장, 부회장, 총무, 각 학년 대표 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 3)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20일 전에 작성 비치해야 한다.
- 4)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 종료 후 자동 해체된다.

제33조 (보궐선거) 학생회 정·부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탄핵을 받을 경우 궐위된 일시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해야 한다.

제34조 (재선거) 학생회 정 부회장이 시행된 선거에 미 당선 될 경우 12일 이내에 재선거를 시행한다.

제35조 (선거 시행 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선거 시행 세칙에 따른다.